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7-⁷⁶⁶호

이 조례(안)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
조례·규칙심의회, 규제개혁 위원회 및
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
있습니다.

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」를 제정하기 이전에 그 입법 취지와 주
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
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7년 5월 일

서울특별시 중구 청장



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
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제14476
호, 2016. 12. 27. 공포, 2017. 3. 28. 시행)함에 따라, 「서울특별시
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
정을 분리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
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다른 법령과의 관계,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
(안 제1조, 제2조, 제5조)
- 나.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,
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(안 제3조, 제4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5. 31(수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[참조:세무1과장,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, 중구청(예관동) 전화 : 02-3396-5102, FAX : 02-3396-8695, E-mail : ergon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구청 세무1과(☎3396-5102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세징수법」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령과의 관계)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(이하 “구세”라 한다)의 징수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관허사업의 제한)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.

제4조(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)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”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(취득세,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재산세,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)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.

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른다.

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

① 「서울특별시 중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」이라 한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 중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」을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」이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「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.